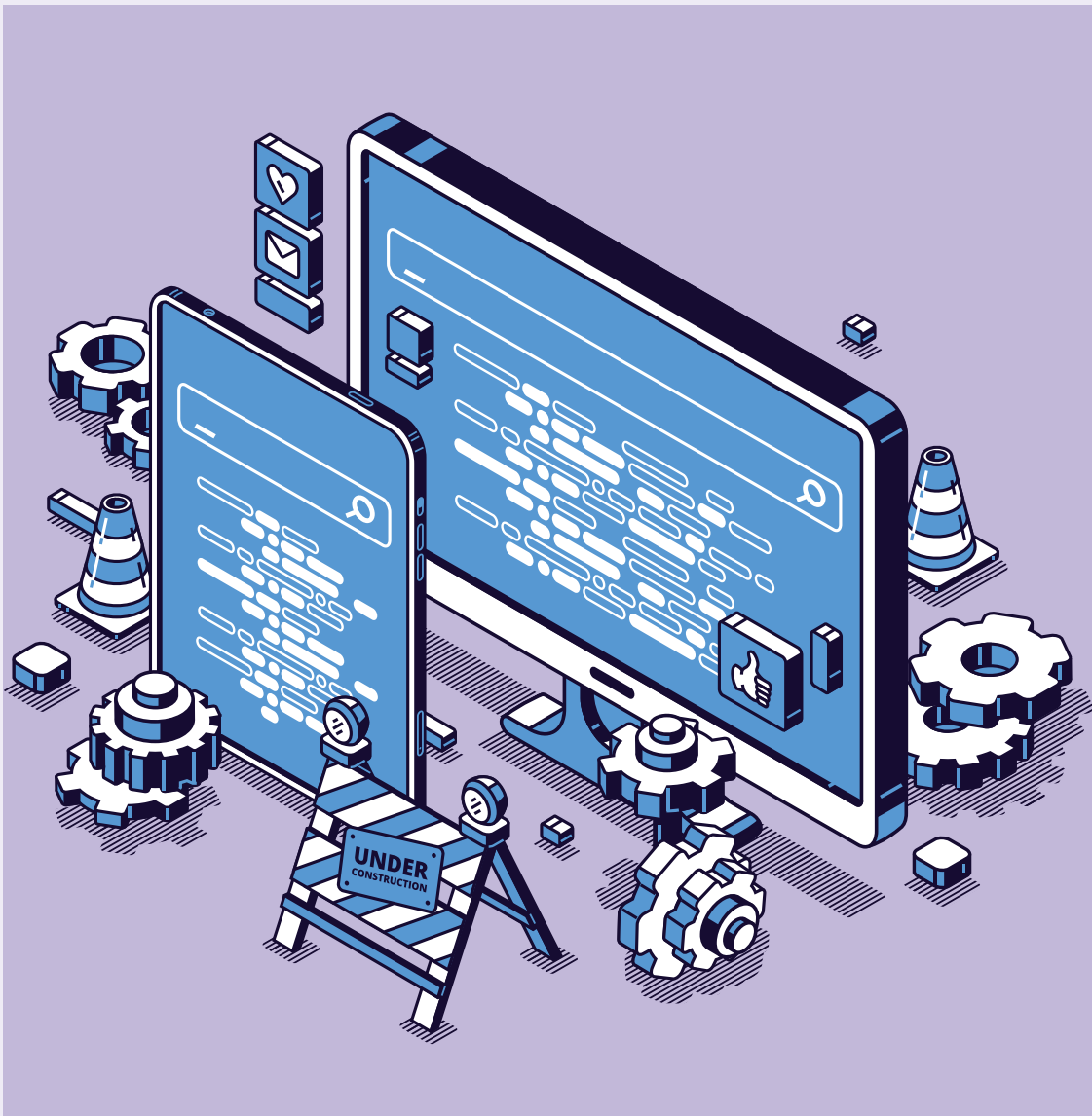


# 03

## 검색 알고리즘은 투명하고 윤리적일 수 있는가

채정화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연구원





인물 연관검색어와  
자동완성검색어를  
폐지했지만...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19 팬데믹은 우리의 일상을 통째로 바꾸어 놓았다. 비가 등장하는 어느 TV 광고처럼 ‘일 1깡’이 아니라 ‘일 1회 코로나 확진자수 확인’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강화 방침으로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개인정보 및 동선 공개를 제한하고 있지만 코로나 19 발생 초기만 해도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로 인해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어느 코로나 확진자는 동선 공개로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확산되면서 ‘불륜’이라는 연관검색어가 함께 노출되는가 하면,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갔거나 발생한 곳은 ‘코로나 식당’, ‘코로나 마트’처럼 수식으로 ‘코로나 낙인’이 찍혀 인격권 침해로 넘어 경제적·정식적 피해까지 입게 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sup>1)</sup>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된 사건과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의 이름, 연예인과 그 연예인의 옛 연인의 이름 등 자동완성검색어와 연관검색어 관련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김지은, 2013). 심지어 A라는 가수는 여자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고 소송까지 진행되자 그 가수의 아버지가 신인 시절에 연루되었던 간통사건까지 연관검색어로 표

1) BBC News 코리아 (2020. 3. 4). 코로나19: 신상털이와 악성댓글에 시달리는 확진자. <BBC NEWS 코리아>, URL : <https://www.bbc.com/korean/features-51733612>, 김기윤 (2020. 8. 9). “망해버려라, 당장 떠나라” 끝없는 비난… 갑자기 죄인이 됐다. <동아일보>, URL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829/102697134/1>

출되고, 새로운 뉴스거리로 재조명되었다(김익현, 2016). 비단 검색어 문제만이 아니라 검색 결과로 나타나는 기사는 시간적으로 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좋은 기사와 좋지 못한 기사가 동시에 검색되어 ‘잊힐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들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피해 당사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2019년 12월 카카오가 인물 관련 검색어 서비스를 폐지한 것을 시작으로, 2020년 3월에는 네이버가 이 대열에 합류하면서 인물명 검색 결과에서 연관검색어 서비스를 종료했다.<sup>2)</sup> 이러한 자발적 조치가 연관 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 서비스의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을 종식시킬 수 있을까?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인 KISO는 회원사가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 삭제 요청에 대해 의문이 생겼을 때 심의를 요청하면 정책위원회가 논의를 거쳐 결정을 내린다. 2020년 주요 심의 안건은 특정 직업 비하, 기업의 명예훼손, 특정 종교단체, 의료기관 명예훼손에 관한 것이었다. 특정 직업 비하 관련 자동완성 검색어 사례의 경우 KISO 정책위원회는 특정 직업인에 대한 차별 비하적 표현이 노출되면 이러한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과도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자동완성 검색어 삭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인물 관련 연관검색어와 관련한 심의 안건은 단 한건도 없었는데, 인물 관련 검색어 폐지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뿐만 아니라 전년 대비 심의 안건이 대폭 감소하였는데, 이는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인물명을 다른 용어와 결합하여 검색하는 경우는 연관검색어가 동일하게 노출되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다. 또한 인물 외 다른 검색어들은 여전히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유 방법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 서비스의 명예훼손은 누구 책임인가?

국내에는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판례는 없지만 KISO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네이버 검색어 검증위원회’의 검증보고서 내용 중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관련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 제외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2018년에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관련 연관검색어와 자동완성검색어 모두 자체 판단 하에 제외한 경우는 한 건도 없는 반면, 신고로 제외한 경우는 연관검색어가 5개월 동안 3,038건이고, 자동완성검색어는 393

2) 김은지 (2020. 2. 28). 네이버, 다음 주 ‘연관검색어’ 폐지·연예 댓글 중단. <한국경제>, URL :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002281772g>

건으로 나타났다. 자동완성검색어보다는 연관검색어의 문제가 보다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최근 KISO 정책규정 제13조의 2(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sup>3)</sup> 제2항 제1호 마목 ‘연관검색어 등 그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동 규정의 사목에 해당하는 ‘사생활 침해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뿐만 아니라 [연예인 + 성형], [연예인 + 성형진] 외 자살시도, 파산, 이혼 등 부정적 단어와 결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제외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 과거 범법 행위와 관련한 것은 제외처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특정인이 아니고도 특정 해당 지역이나 장소, 업체의 명예훼손 관련한 사례들도 지속적으로 쟁점 사안이 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지만 소비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이용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검색어에서 제외 처리를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상반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심의 안전에서 주요 쟁점 사안은 실무적 차원에서 삭제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 적용의 문제이고, 근본적인 법적 판단 기준으로서 판별 요소에 대한 논의가 아니다.

3) 제13조의2(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

- ①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 결과로 인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받은 자는 대상 연관검색어 등을 특정하고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해당 회사에게 그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요청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해당 검색어를 삭제 또는 제외할 수 있다.
  1.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 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요청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일반 이용자의 알 권리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가. 제5조 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는 요청인과 관련된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요청인이 수행한 공적업무 또는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사생활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
    - 나. 제5조 제2항의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 요청인과 관련된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결과가 사생활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
    - 다.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 결과가 허위사실임이 소명된 경우
    - 라.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연관검색어 등 또는 그 검색 결과가 언론의 보도 등으로 공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다만,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의 공적 업무에 관한 내용은 예외로 한다.
    - 마. 연관검색어 등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오인시키는 경우
    - 바. 연관검색어 등을 선택했을 때 검색 결과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러한 의미와 무관한 내용만 확인되는 경우
    - 사. 기타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 결과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2. 연관검색어 등 또는 해당 검색 결과가 저작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경우
  3. 연관검색어 등 자체가 특정 지역, 종교, 사상, 장애, 인종, 출신 국가 등을 비하하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어 연관검색어 등으로 그러한 단어를 노출시키는 것이 과도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기업 등이 요청한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 등을 제출하거나,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결정 등을 제출하여 해당 기업 등에 관한 검색에서 경쟁사 등의 상호나 상표가 연관검색어로 노출되는 것이 명백한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소명된 경우 (따라서 어떤 기업 등의 상호나 상표에 대한 연관검색어로 경쟁사 등의 상호나 상표가 현출된다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음)
  5. 개인, 기관, 단체 등이 연관검색어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로서, 특정 사건에 관련된 개인, 기관, 단체, 지역 등의 실명을 언급한 언론 보도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연관검색어 등을 통해 공개됨으로써, 해당 개인 또는 기관, 단체, 지역에 속한 구성원들이 불이익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표 1]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연관검색어/자동완성검색어 제외 사례

구분			2018년 상반기				2018년 하반기		
			1월	2월	3월	합계	9월	10월	합계
연관 검색어	명예 훼손 및 사생활 침해	신고에 의해 제외	53	694	1,093	1,840	544	654	1,198
		자체 판단에 의해 제외	0	0	0	0	0	0	0
자동 완성 검색어	명예 훼손 및 사생활 침해	신고에 의해 제외	4	114	138	256	38	99	137
		자체 판단에 의해 제외	0	0	0	0	0	0	0

출처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제2기 검증위원회 (2019, 2020).

한편 해외에서는 관련 판례들을 통해 법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고, 구글을 상대로 승소한 사례도 있는 반면, 패소한 사례도 있다.

2012년 독일 연방법원은 크리스티안 볼프(Christian Wulff)의 전 영부인, 베틀나 볼프(Bettina Wulff)와 관련한 검색어 8개를 구글에 삭제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sup>4)</sup> 구글에 베틀나 볼프를 입력하면 ‘홍등기’, ‘에스코트’ 등의 매춘을 암시하는 단어가 함께 노출되어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구글 측은 자동완성 기능의 경우 사용자들이 많이 찾는 결과를 바탕으로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으로 완성되는 것이어서 삭제가 어렵다는 주장을 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관련 검색어만 삭제 대상에 포함하였다.<sup>5)</sup>

같은 해 호주의 Michael Trkulja라는 남성은 자신의 이름과 함께 Melbourne Crime, Underworld, Gandland 등의 범죄 관련 단어가 자동완성으로 제시되고, 2004년 촬영된 자신의 뒷모습 사진은 호주 멜버른의 중요 범죄자인 것처럼 검색 결과로 제공되어 자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구글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sup>6)</sup> 이 남성은 총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기는 했지만,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완성검색어 뿐만 아니라 이미지 검색 결과가 자신을 범죄자로 인식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였다. 구글

4) 경향신문 디지털뉴스팀 (2012. 11. 5). 구글, 베틀나 볼프 전 독일 영부인 관련 검색어 삭제 ... 왜?. <경향신문>, URL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050843541&code=970205](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050843541&code=970205)

5) KBS 월드뉴스 (2013. 5. 21). “구글 검색어 자동 완성 기능, 인격권 침해”. <KBS>, URL : <https://mn.kbs.co.kr/news/view.do?ncd=2662236>

6) 연합뉴스 (2012. 11. 12). 호주법원, 구글에 개인 명예훼손 손해배상 판결. <연합뉴스>, URL : <https://www.yna.co.kr/view/AKR20121112209100009>



은 해당 검색 결과가 이용자들의 검색에 의해 생성된 결과임을 강조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구글에 벌금을 부과하였다(김지은, 2013). 결국 법원은 구글이 단순히 전달자가 아닌 ‘발행인(publisher)’으로서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2013년 일본 도쿄지방법원도 한 남성이 구글의 자동완성 기능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하면 범죄를 연상시키는 단어가 표시되어 시정을 요구하였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본에서도 이 사건은 구글의 자동완성 기능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한 첫 사례로 기록되었다.<sup>7)</sup>

그 외에도 2012년 프랑스의 한 보험회사인 Lyonnaise de Garantie를 검색하면, 사기꾼(crook)이라는 단어가 함께 노출되어 회사는 구글을 상대로 명예 훼손 검색어 삭제 및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구글에 대해 삭제조치와 벌금을 부과하였다(김지은, 2013).

2016년 구글은 ‘유태인은(are Jews)’이라고 검색하면 자동완성검색어로 ‘사악하다(evil)’가 노출되어 이를 제거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구글은 자동완성검색어 서비스에 대해 다양한 콘텐츠를 종합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지만(김익

7) 조준형 (2013. 4. 16). 일본법원, 구글 자동완성기능 사생활 침해 인정. <연합뉴스>, URL : <https://www.yna.co.kr/view/AKR20130416108400073>

현, 2016), 이러한 해명이 늘 면책이 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에서는 검색어 문제는 아니지만 2018년 구글 인물검색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증언자인 고(故) 문옥주 할머니가 ‘매춘부’로 표기돼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다. 구글 측은 인물정보를 관리하는 알고리즘 오류라고만 밝히고, 인물검색 알고리즘이 왜 오류를 일으켰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sup>8)</sup>

이 사건은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도 아니고 구글의 수정 조치로 일단락되었지만 다시금 구글이 검색서비스 사업자로서 투명성 원칙에 준하는 소명을 다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게 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영국에서는 구글이 승소한 사례도 있다. 영국 원격 교육회사인 Metropolitan사는 구글에서 회사 이름을 검색할 때마다 ‘사기’라는 단어가 연관 검색어로 노출되어 구글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였다. 영국고등법원은 검색된 표현의 작성에 구글이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으므로 구글은 ‘단순한 전달자(mere conduit)’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으로 영국에서는 검색엔진이 명예훼손적 게시물과 관련된 행위를 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 면책권을 받은 선례로 남게 되었다. 그러나 구글이 왜 다른 온라인서비스사업자와는 달리 ‘단순한 전달자’로서 면책될 수 있는지에 대한 영국 법원의 설명은 미흡했다(박아란·오세욱, 2016). 반면 미국은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제230조에 의거하여 인터넷서비스사업자는 이용자의 명예훼손적 내지 사생활 침해적 게시물로 인한 책임으로부터 완전 면책된다. 따라서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인터넷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나라마다 검색 서비스의 책임 소재에 대한 판단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 자동화 검색 알고리즘의 인간 개입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부터 각기 다른 차별적인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 기존 판례를 비취볼 때 법원은 검색어 알고리즘 검색서비스사업자를 표현 또는 의견을 표명한 발행인으로 판단하는데 있어 엄정한 판별 기준에 의거한 법적판단 보다는 가치 판단을 우선으로 해석, 판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의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여부 판단 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나?

8) 주영재 (2018. 1. 8). 구글 인물검색, 일본국위안부 ‘매춘부’ 표기 ... 앞서, 독도, 동해 명칭 논란. <경향비즈>, URL :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01081751001&code=920501&s\\_code=ah681](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01081751001&code=920501&s_code=ah681)

##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무엇이 중헌디?

연관검색어와 자동완성검색어로 인한 피해가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자동 알고리즘의 결과물인 연관 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을 단순한 전달자로 볼 것이냐, 또는 검색 결과물을 인간의 개입에 의한 표현물로 보고 구글을 발행인으로 볼 것이냐는 문제에서부터 이러한 검색 결과를 표현물로서 보호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과 개인의 인격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이익형량 해야 하는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인격권은 권리주체와 분리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에 관한 권리로서 인격을 형성, 유지 및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김경훈·이원태 외, 2018). 인격적 이익은 생명, 신체, 건강, 명예, 정조, 성명, 초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며, 사람의 성명이나 초상 등은 한 개인의 인격적 상징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의 인격권에는 명예권, 성명권, 사생활권, 초상권 등이 포함된다(박아란·오세욱, 2016; 김경훈·이원태 외, 2018). 이러한 권리는 헌법 제10조<sup>9)</sup>에 의거하여 인간의 본질이자 고유한 가치인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으로 보장된다. 헌법상 인격권은 민법의 일반규정 등을 통하여 사법적으로 보장되므로 개인의 명예가 훼손당하거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동의 없이 성명 및 초상이 이용되었다면 그 개인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박아란·오세욱, 2016).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구제수단만으로는 피해의 완전한 회복과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 구제수단으로서 침해행위 정지, 방지 등의 금지청구권<sup>10)</sup>도 인정하고 있다(김경훈·이원태 외, 2018). 그러나 온라인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근거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뿐만 아니라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징역 및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때 형법 제309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일반 명예훼손죄에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가중처벌이 가능한지는 명확하지 않다(강명희, 2015).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 혹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성립

9)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10)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공1996상, 1486).

한다(김경훈·이원태 외, 2018). 따라서 행위자의 직접적인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인터넷 상에서 명예훼손적 표현물을 매개 또는 유통한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게 ‘비방을 목적으로 한 법적 책임을 지우기에는 입증의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도 불명확하다(박아란·오세욱, 2016; 김경훈·이원태 외, 2018). 해외의 경우 악의적 목적이 없다 하더라도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제시되는 링크와 글을 통합하고, 검색 결과 내에서 정보 토막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관련 링크들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이차 정보 제공자(secondary publisher)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글에 배상하도록 한 바 있다.<sup>11)</sup>

뿐만 아니라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로 인해 명예훼손적 단어들의 노출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들에서도 알고리즘은 구글이 생산하고 소유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책임으로 배상판결을 내리고 있다. 결국 검색서비스사업자가 ‘비방의 목적’을 가진 의도성에 방점을 두기보다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무게를 두고 책임성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결론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효과보다는 개인의 명예훼손 피해가 더 크다고 본 것이다.

국내에서는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와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활발하지 못했다. 법적 미비 및 공백의 문제를 차치하고, 정보 검색서비스의 검색 결과로서 연관검색어와 자동완성검색어를 ‘표현(speech)’으로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논란에서부터 검색 알고리즘에 의한 검색 결과의 노출이 ‘발행인 또는 게이트키퍼’의 역할에 해당하는지, ‘단순한 전달자(mere conveyance)’의 역할에 해당하는지 등 그 판단에 따라 법적 책임의 귀속 여부가 달라진다. 알고리즘의 검색 결과를 인간의 가치 판단이나 개입이 없고 기계적이고 수동적인 알고리즘의 결과물로서 단순한 전달자 역할로 규정한다면 정보검색서비스 사업자들은 면책될 수 있지만, 알고리즘 구성에 인간의 가치 판단이나 우선순위가 적용된 표현으로 본다면 단순한 전달자가 아닌 발행인으로서의 법적 책임을 지우게 된다(박아란·오세욱, 2016). 연관검색어와 자동완성검색서비스를 표현으로 간주하면 보호해야 할 대상이지만 공공의 이익과 이 서비스로 인한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의 폐해를 이익형량 해야 한다.

미국에서도 검색 알고리즘을 표현으로 인정할 것이냐 여부에 따라서 법익이 상충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연방거래위원회의 구글 조사 보고서뿐만 아니

11) Tribunale Ordinatio di Milano, court order of 24. March 2011, file no. 10847/2011.



라 Volvo와 Falk(2012)는 검색 알고리즘에 해당 기업과 인간의 결정에 따른 가치 판단이 담겨있고 사용자 입력(input)에 의해 구성된 알고리즘 검색 결과 배열도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박아란·오세욱, 2016; 김경훈·이원태 외, 2018). 그러나 미국 통신품위법에 의거하면 인터넷사업자를 발화자나 발행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면책규정을 적용하게 되는데 두 법익간 충돌 문제가 발생한다.

국내에서는 검색서비스의 검색 결과로 특정 연예인의 이름을 이용한 음란물 사이트가 검색되는 것에 대해 인격권 침해로 소송이 제기된 바 있으나 법원은 인터넷 검색서비스는 속성상 중계 및 연결 정보만을 제공하는 '무차별성·무색투명성의 특징'을 가진다고 판단한 바 있다(박아란·오세욱, 2016). 또한 게시물과 관련하여 가처분 신청사건의 경우 특정 게시물 삭제 요청은 받아들였으나 포털사이트의 검색엔진에 해당 게시글이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해당 사이트의 영업을 사실상 중단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내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보다는 전달자 혹은 발행인 여부에 따른 책임성 판단에 집중해 온 경향을 보인다.

네이버의 연관검색어, 다음의 관련검색어 그리고 자동완성검색어 또는 컨텍스트 자동완성 기능 등 검색어 서비스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서 '표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표현이라고 하면 의견



표명을 일컬으며, 이 의견 표명이 무엇이나에 따라 표현의 보호 범위가 달라진다(강명희, 2015). 표현의 자유에서 보호하는 의견은 모든 사물과 인간에 대하여 평가적인 사고의 과정을 거친 개인의 평가적 가치 판단 또는 입장 표명을 일컫는다(한수웅, 2011). 이러한 관점에서는 헌법이 보호하는 ‘표현’은 가치 판단이 개입되어 있는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강명희, 2015, p. 19 재인용). 그렇다면 해외 판례에서와 마찬가지로 검색 알고리즘의 결과물로서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가 가치 판단이 개입된 의견으로 볼 수 있느냐가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며, 근본적으로는 개발자의 가치 판단이 개입된 것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연관검색어는 이용자의 검색 추이도와 검색 이용 행태, 연관도 등을 시스템이 자동으로 분석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검색 결과는 이용자의 관심에 따라 꾸준히 변화한다. 자동완성검색어는 이용자가 의도한 검색어 일부만 입력해도 입력한 문자가 포함된 다양한 자동완성어를 추천해준다. 네이버의 컨텍스트 자동완성은 빅데이터 분석기술로 로그인 사용자와 같은 또래의 사용자 그룹, 관심사 그룹에 맞춰 제공한다. 로그인을 하지 않은 사용자는 전 세대 공통 일반 자동완성이 노출된다. 이처럼 연관검색어든 자동완성검색어든 검색 알고리즘을 통한 자동 분석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설계 자체가 가치 판단이 개입하게 된다는 측면에서는 표현으로도 볼 수 있고, 자동으로 분석되는 점에 방점을 두면 표현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시각이 이전 판례를 통한 결과

이다. 이는 검색 알고리즘의 기술적 속성에 근거한 법리적 판단이기 보다 가치 판단에 근거한 결론이다. 해외 판례에서처럼 검색 결과가 보호의 대상이지만 타인의 명예나 사생활 침해로 인한 폐해가 더 크다면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 연관검색어 등을 표현으로 보지 않으면, 단순 전달자에 해당하는 검색서비스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논리 구조는 기계적으로 답습해 온 관례이다. 검색 알고리즘이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리적 논거가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간과하고 있던 기술적 속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단순히 검색 알고리즘의 자동화 여부로 개인의 가치 판단 및 의견의 개입성을 판단하는 틀을 허물 필요가 있다. 때로 자동화라는 측면에서 연관검색어와 자동완성검색어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표현물로서의 판단도 상이했던 경우도 있지만 왜 법리적 판단이 상이한 결론에 도달했는지에 대한 법원의 설명은 부족했다. 한편 검색어 알고리즘이 전달자든 발행인이든 검색어 조합을 통한 사회적 의미의 생성자(김정민·황용석, 2019)라는 관점에서 보면, 검색어 알고리즘 자체가 단순 전달자를 넘어서는 대상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에서의 목소리가 크지 못했다.

검색어 관련 소송이 제기될만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현재까지는 자율규제 차원에서 KISO를 통한 검색어 삭제 요청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KISO의 정책 규정 중 제13조의 2(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에 따르면 연관검색어 등의 검색 결과로 인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가 발생하면 연관검색어 등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요건에서 정무직 공무원 등 공인은 국가를 이끌어간다는 측면에서 도덕적 측면이 강조되기 때문에 공적인 업무와 관련된 일정 부분의 사생활 관련 정보는 삭제되지 않음을 밝히고 있으며, 일반인의 사생활 요건은 대중의 알 권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검색 결과가 사생활을 침해할 경우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KISO의 심의 사례 및 네이버 검증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명예훼손 여부를 언론의 보도 여부로 판단하는 등 검색어 삭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무적 차원의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검색 알고리즘의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여부와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무성을 요구하기 위한 논의로의 발전 가능성이 희박함을 시사한다.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의 인격권 침해 가능성을 줄이고, 검색어 알고리즘의 건전한 자정 기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법리적 논리 개발 외에 또 무엇이 필요할까?


## 검색 알고리즘은 투명하고 윤리적이 수 있을까?

검색서비스 사업자들은 KISO를 통해 정책 규정을 만들고, 네이버는 검색어 검증위원회를 두는 등 검색서비스 사업자들 나름대로 검색 알고리즘 투명성과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을 해왔다. 그러나 이는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적 조치가 아닌 사후적 조치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분명 연관검색어와 자동완성검색어도 검색서비스 이용자들의 검색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이며, 특정한 검색어를 적극적으로 추천함으로써 이용자의 행동을 유도하는 주요 전략이다(김정민·황용석, 2019). 대부분 이용자들이 이러한 기능의 편리함으로 서비스의 만족도가 높다 하더라도, 또 다른 측면에서는 원하지 않는 검색어 노출로 인한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로 고통받는 이들도 있다. 편리한 검색서비스의 이면에 명과 암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2018년 카카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알고리즘 윤리헌장을 발표했다. 카카오 알고리즘의 기본 원칙은 알고리즘과 관련된 모든 노력을 우리 사회 윤리 안에서 다하고, 이를 통해 인류의 편익과 행복을 추구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알고리즘 결과에서 의도적인 사회적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하고, 알고리즘이 자의적으로 훼손되거나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엄정하게 관리할 것임을 헌장에 포함하고 있다. 이용자와의 신뢰 관계를 위해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알고리즘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할 것 역시 천명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지능정보사회 윤리 가이드라인’과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 등을 발표하며 알고리즘의 책무성과 투명성, 설명 가능성의 원칙들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의 AI 윤리 원칙은 AI알고리즘 오류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선언적 수준의 자율 지침으로 볼 수 있다. 기업과 이용자 모두에게 가이드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보다 적극적인 기업의 노력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힘들다.

최근 설명 가능한 AI알고리즘에 대한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설명 가능한 AI는 사용자가 AI 시스템의 운영과 최종 결과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결과물의 생성 과정을 설명해주는 기술을 일컫는다(금융보안원, 2018). 일례로 AI 시스템이 고양이 이미지를 분류하면, 설명 가능한 AI는 고양이 여부를 근거로 제시하여 만천하에 사용자에게 설명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편견을 AI알고리즘이 학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도 시도되고 있다.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도 검색 알고리즘의 자동화된 검색 결과에 따른 것이라는 대응에서 한 단계 진일보할 필요가 있다. 얼마 전 네이버가 자사 서비스 우선 노출을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한 사건이 일천하에 공개되면서, 검색 알고

리즘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했다. 이는 인간의 개입이 어렵다고 한 검색 알고리즘이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라고 볼 수 있다. 연관검색어와 자동완성 검색어 역시 이용자의 이용 행태에 근거한 검색 결과이지만 노출 단어를 결정하는 요소들에 가중치를 두는 것 등 여러 측면에서 의도적 개입의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역으로 검색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도 가능할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연관검색어와 자동완성검색어로 인한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 및 논리의 개발과 더불어 검색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확립하기 위한 자발적 노력이 요원하다. 그 첫 시작으로 설명 가능한 검색 또는 검색어 알고리즘은 어떻게? 

참고 문헌

- 1) 강명희 (2015).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와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소고. <법제논단>, 1, 6~31. 참조
- 2) 김경훈·이원태·문정욱·황용석·이현주·정재관·김기태 (2018). <지능정보화 이용자행태 조사방법론 개발 및 실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3) 김정민·황용석 (2019). 알고리즘 기반 자동 추천 검색어의 표현물적 특성과 법적 쟁점 : 관련 해외 판결을 중심으로. <언론과 법>, 18(2), 1~32.
- 4) 김지은 (2013). 구글의 자동완성검색어 관련 해외 소송사례 소개. <KISO 저널>, 제10호. URL : <https://journal.kiso.or.kr/?p=2315>.
- 5) 김익현 (2016). 검색알고리즘과 권리침해 : 연관검색어-자동완성검색어 서비스의 명과 암. <KISO 저널>, 제25호. URL : <https://journal.kiso.or.kr/?p=7788>.
- 6) 박아란·오세욱 (2016). 검색 알고리즘과 인격권 침해. <미디어와 인격권>, 2(1), 3~60.
- 7)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제2기 검증위원회 (2020). <네이버 '노출제'의 검색어에 대한 검증보고서 : 2018년 하반기>
- 8)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제2기 검증위원회 (2019). <네이버 '노출제'의 검색어에 대한 검증보고서 : 2018년 상반기>.
- 9) 한수웅 (2011). <헌법학>. 서울 : 법문사